

기획재정부 <small>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</small>	보도자료	
	보도일시 : 2008. 7. 7(월) 조간	
배포일시 2008. 7. 4(금) 10:00	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	
담당과장 안내형 과장(2150-5450)	담당자 백병갑 사무관(2150-5452)	

제목: '0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1.9억원 지급
 -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5,545억원 재정개선 -

□ 7월 3일(목) 기획재정부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*를 개최

-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'07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1.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

*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: 위원장(제2차관), 위원 10명(민간위원 6명, 정부위원 4명)

□ '0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① 총 20개 기관, 163건(479명) 신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개 기관, 55건(166명)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결정

- 이에 따른 재정개선효과는 5,545억원 (지출절약 2,109억원, 수입증대 3,436억원)

② 주요 지급사례

- T-50·TA-50 항공기 고가부품 정비관련 장비 자체 제작(국방부) : T-50 고등훈련기 및 TA-50 전술입문 훈련기 정비지원용 장비를 전량 업체 구매방식에서 공군 자체기술 개발로 제작이 가능한 장비는 직접 제작·대체 조달하여 구매비 절감

- 외화표시채권 감면소득 계산기준의 제시(국세청) : 법인세 감면대상인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 감면소득 계산시 공통이자비용을 안분함에 있어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파생상품수익에는 공통이자비용을 배분하면 안된다는 기준을 신규로 정립하고, 실제 적용하여 과다계상된 감면소득을 적출

- '선박'의 정의 재정립을 통한 부가세 추가 징수(관세청) : '부선거'*는 선박으로 분류되어 수입시 부가세가 감면되어 왔으나 '부선거'는 해상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선박등록을 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논리를 새로 개발하여 그동안 감면된 부가세 전액 추징

* 부선거(浮船渠) : 선박검사 및 수리를 위한 해상구조물

- 혈흔 및 정액반응검사 대체시약 개발(경찰청) : 범죄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고가의 '혈흔·정액반응 검사용 시약'을 저렴한 대체시약으로 자체개발·보급하여 예산절감

□ '0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,

- 지급건수(55건) 및 지급액(1.9억원)은 '07년 하반기(2.1억원)보다 감소
- 성과금 지급비율*은 33.7%로 '07년 하반기 38.5%보다 감소

* 지급건수/신청건수 : ('07.하) 62/161 → ('08.상) 55/163

	'07년 하반기	'08년 상반기
· 신청건수(A)	161	163
· 지급건수(B)	62	55
· 성과금 지급비율(B/A)	38.5%	33.7%
· 성과금 지급액	2.1억원	1.9억원

-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촉진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예산성과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
 - 각 부처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재정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
 - 독창적인 제안 발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'08년 하반기에 성과금 지급 한도액 인상 검토
 - 그동안 수입증대 노력에 성과금 지급이 많았으나 향후 지출절약 분야의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 비중 증대

기획재정부 대변인

〈붙임 1〉 예산성과금제도

- 제도 도입 :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('98. 5)
- 지급요건
 -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,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된 경우
 -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
- 지급대상
 -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
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·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예산낭비신고자
- 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

비고	예산 절감의 경우			수입증대의 경우
	정원감축	경상적 경비	주요 사업비	
지급 한도	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	절약된 경비의 50%	절약된 경비의 10%	수입증대액의 10%

* 예산성과금은 타부처에 전과 가능한 경우 30% 가산 지급되나 1인당 39백만원이 한도